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

2024. 9

목 차

I. 제안 배경 1

① 왜 서비스 산업인가

②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II. 정책과제 4

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1)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는 공유숙박 5

(2) 시대 발전과 유리된 호텔 등급심사 평가 8

② 마지막 수문을 잠궈버린 규제

(3)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행위(건강관리서비스) 제한 9

(4) 한국영화 벤처캐피탈 투자 제한 11

③ 허용인 듯 허용이 아닌 규제

(5) 드론 비가시권 비행 불가 12

(6) 자율주행로봇의 학습 제한 15

④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규제

(7)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 제한 16

(8) 원격의료 서비스 제한 19

(9) 핀테크 생태계 조성 지연 21

(10) 시간제한 등 과도한 게임규제 24

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11) 원료 생산자만 규제하는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 27

(12) 비현실적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28

6 산업 발전을 불드는 발목 규제

| | |
|--|----|
| [13] 대형마트 규제 (공휴일 의무휴업 · 온라인 배송규제) | 29 |
| [14]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생협력 의무 중첩 | 31 |
| [15] 대규모유통 전자계약 미교부 시 보복성 제재 | 33 |
| [16]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행정절차 중복 | 34 |
| [17] 대기업 대상 거래에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법 | 35 |
| [18] 과도한 부담의 홈쇼핑 재승인 조건 | 36 |
| [19] 중소상공인 운영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제 | 37 |

7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규제

| | |
|--------------------------------|----|
| [20] 의료기기 사진광고 금지 | 38 |
| [21] 비은행권 자금이체업무 금지 | 40 |
| [2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회사 차입 제한 | 42 |

8 챙겨야 할 나몰라라 산업

| | |
|-----------------------------------|----|
| [23] 첨단재생의료 저위험도 시술 승인절차 완화 | 43 |
| [24] 첨단 바이오의약품 활용기반 확대 | 45 |
| [25] 항공기부품 무관세화 | 47 |
| [26]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48 |
| [27] MRO산업 국내기업 역차별 개선 | 49 |

9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마중물 산업

| | |
|--------------------------|----|
| [28]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 50 |
| [2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51 |
| [30] 관광청 설립 | 52 |

I. 제안 배경

1] 왜 서비스 산업인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 일자리 창출효과, 제조업 대비 1.3~1.8배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 건설업 등 우리경제의 전통적인 강점 산업보다 훨씬 큼
 - * 부가가치유발계수('20, 한은) : (서비스)0.89, (제조업)0.67, (건설)0.83, (농림어업)0.85
 -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 한은) : (서비스)8.62, (제조업)4.74, (건설)8.23, (농림어업)4.25

경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우리나라 성장수준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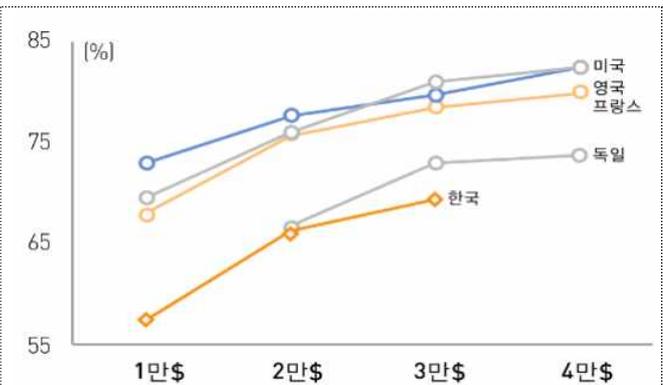
- (경제의 서비스화) 세계 주요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 우리나라는 유사한 발전단계의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 성장수준 저조

< 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 자료: Our World in Data (Global Change Data Lab)

< 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고용 비중 >



* 자료: 기재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발전 필수적

-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 여지가 큼
 - * 韓 서비스산업 생산성 OECD 평균수준으로 제고시 0.5~1%p 성장률 제고 효과 ('19,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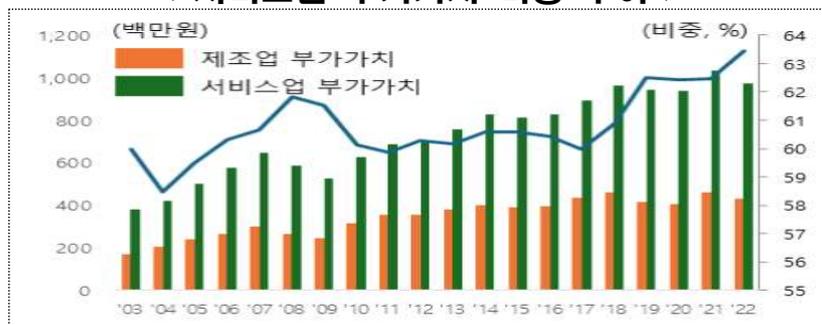
2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이 낮음

□ (부가가치 비중)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58.0%)은 미국(77.6%), 영국(72.2%), 일본(71.4%)을 비롯한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2년, WB): (韓)58.0, (美)77.6, (英)72.2, (日)71.4, (佛)70.7, (獨)62.7
(** 미국은 '21년 기준)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



* 자료: 통계청, OECD

□ (고용 비중)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70%를 초과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조한 편

* 서비스업 고용 비중(%), '21년, ILO): (韓)70.0, (英)81.0, (美)79.2, (佛)78.0, (日)73.1, (獨)71.1

한국의 서비스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

□ (노동생산성) 한국의 서비스 노동생산성은 주요국(G7) 중 최하위 기록, 반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한국의 서비스 노동생산성, 제조업의 47.5% 수준

< G7국가 서비스 노동생산성 ('21년) >



< G7국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21년) >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OECD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환율)

영세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구조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 일자리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하여 서비스업의 영세성이 높음
- * 2020년 서비스 취업자 비중 및 순위(OECD 36개국 中) : 도소매·숙박음식업(30%, 9위), 운수창고업(7.9%, 12위), 정보통신업(4.5%, 22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2%, 28위)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 진행 미흡

- (제조업의 서비스화) 5개 제조 강국(한·미·일·독·중) 중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제조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여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가장 낮은 낮음
-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 및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가 5개 제조강국 중 가장 낮은 상황
- *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비중('21, 무역협회)
한국(27.9%), 독일(36.5%), 일본(30.4%), 중국(29.7%), 미국(28.2%)
- **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21, 무역협회)
한국(0.30), 중국(0.44), 미국(0.38), 일본(0.37), 독일(0.36)
- 서비스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비서비스화 기업 대비 이윤율이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남 ('21, 무역협회)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

- (서비스 R&D 투자 비중) 한국의 서비스 부문 R&D 투자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규모와 비중이 현저히 낮음
- * 주요국 서비스업 R&D 투자 규모 & 비중 (달러, '18, OECD)
한국(70억 / 8.9%), 미국(1,612억 / 36.2%), 프랑스(310억 / 36.2% ('17년)), 영국(209억 / 15.4%), 일본(164억 / 12.0%), 독일(136억 / 14.0%),

서비스 수출 및 서비스 기업의 성과 저조

- (서비스 수지)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3년째 만성적인 적자이며, 지난 20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300조원대 기록
- * 누적 서비스 수지 (달러, 2000~2021, 경총)
한국(-2,529억), 미국(3조7,785억), 영국(2조5,558억), 일본(-6,954억), 독일(-7,614억)
- (한계기업) 우리나라의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감당이 어려운 기업, '19년)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38.1%로, OECD 평균(10.1%) 크게 상회

II. 정책 과제

① 강점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①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빌려 회사 워크샵” 알고보니 불법... 외국인 1명 끼면 합법?

1. 제안배경

□ [현황] 내국인의 공유숙박업 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유숙박 관련 제도 미흡

○ 국내에서 공유숙박이 새로운 여행 행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2022년 에어비앤비 객실(14,130개)이 서울 전체 객실(61,483개)의 18.7% 차지
(퍼듀대 CHRIBA연구소)

○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집주인 실거주 의무 및 주택 유형 제한(오피스텔 불가) 등 제약 존재

○ 내국인 대상의 영업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0)로 허용했으나*, 공급 물량 제한(4,000개), 영업일수 제한(연 180일) 등 한계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조항

□ [문제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려움

○ (집주인 실거주 의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며, 실거주 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적 단속 수단 또한 부재한 상황

○ (오피스텔 제외) 접근성이 좋고 활용에 장점이 많은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이용 불가

○ (내국인 이용 제한)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방식이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업체 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함)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

* 현행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 상,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은 '위홈', '미스터멘션' 플랫폼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플랫폼 인지도가 낮고 등록 숙박업체가 적어 실효성 저하

*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등록 숙소는 약 5만 개이나, 정부 승인 업체는 약 5천 개에 불과(22년 국감)할 정도로 공유숙박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주요국 공유숙박 운영 현황

- 주요국은 공유숙박을 제도화하여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영업일을 차등 규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규정 적용

〈 주요국 공유숙박 관련 규정 〉

| | 프랑스 파리 | 미국 샌프란시스코 | 독일 베를린 |
|------------------|--|---|--|
| 합법화 | 주택법 개정(2017) | 단기임대업으로 허용(2015) | 주택불법전용금지법 개정(2016) |
| 영업일수 & 호스트 거주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월 이상 거주 주택 : 집 전체 렌트는 연 최대 120일, 방 1개 렌트는 기간 제한 없음 • 제2거주지 :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75일 이상 의무 거주 조건 • 호스트 거주시 영업일수 제한 없고, 호스트 부재시 연간 90일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거주지 : 주거지 면적 50% 이하를 단기 임대하는 경우 별도 기간 규정 없음 • 제2거주지 : 당국 허가시 연간 90일 |

* 자료 :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현안 연구(20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2021),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2. 건의과제

□ 공유숙박업 제도화 및 규제 합리화

-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 신설

- 관련 산업 제도화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단일 규정으로 공유숙박 관리

| 현행 (관광진흥법) | 개 선 안 |
|--|---|
|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가. ~ 다. (생략)</p> <p><신설></p> |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공유숙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p> |

○ 실거주 의무, 공급 제한, 영업일 제한 규정 폐지

○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가능 주택 유형에 추가

|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 개 선 안 |
|--|--|
|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 마. (생략)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생략)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생략) 사. (생략) <u><신 설></u></p> |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숙박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p> |
| <p><규제특례지정 2019-21-a-1호 지정조건> ○ 전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로 하며 (호스트의 주소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정)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 ○ 위함 및 호스트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시 발효와 동시에 개정법의 규율에 따를 것</p> | <p><삭제 및 신설 법안 규정 준수></p> |

② 시대 발전과 유리된 호텔 등급심사 평가

“성에서 보내는 하룻밤” 프랑스 샤토 호텔, 한국 오면 3성급 곤두박질

1. 제안배경

- [현황] 호텔업 등급심사 중 일부 평가기준(미니바, 룸서비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우수한 비즈니스·부티크 호텔이 4성 호텔 평가대상 누락
- 호텔업은 매 3년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등급평가를 의무적으로 수검
(주무관청: 한국관광공사 / 위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미니바 미운영시 감점, 사실상의 의무조항으로 작용
 - 룸서비스 일 12시간 이상 운영하지 않을 시 등급결정 보류
- 비즈니스, 부티크, 라이프스타일 호텔 등 변화·발전하고 있는 관광 및 호텔업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옛날 스타일의 고착화된 서비스 개념 요구
 - 고객 수요와 서비스 트렌드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기준
- * 부티크호텔 : 작은 규모이나 독특한 디자인과 인테리어, 특정한 컨셉 등으로 기존 호텔들과 차별화를 이룬 호텔
-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2항
- [문제점] 등급심사 필수요소를 갖추기 위해 미니바와 룸서비스 등 2종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의무 발생
-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엄격한 평가항목 적용

※ 주요국의 호텔 등급심사 : 국제 통용 평가기준 없음

- 미국 : 정부차원 규제 없이 민간협회에서 평가 운영
- 일본 : 등급제도 없음
- 유럽 : 미니바, 룸서비스 중 1개 운영 시 평가기준 충족

2. 건의과제

- 현행 4성 호텔 미니바, 룸서비스 관련 평가기준을 가점 방식으로 전환
- 4성 호텔 미니바 미운영 감점, 룸서비스 일 12시간 미운영시 보류
→ 필수사항이 아닌 확실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완화

② 마지막 수문을 잠궈버린 규제

③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행위(건강관리 서비스) 제한

노인복지주택 내 양호실 운영이 불법? 혈압 측정, 찜질 등 기초서비스 허용 필요

1. 제안배경

□ [현황] 현행법상 노인 복지주택 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으며, 노인 복지주택 소속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없는 기본적인 건강측정이나 처치가 불가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25.3%에 달할 전망('24년 현재 19.2%)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 및 간호사실의 시설과 설비’ 에 대해 명시, 입주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배치기준 및 수행업무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됨

※ 관련법령 : 의료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문제점] 노인 복지주택에서 신체 계측, 혈당 및 활력징후 등 건강수치 측정, 일반의약품 제공, 상처 소독 등 간단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

○ 노인 주거시설에서의 간호사 활동은 ‘비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로 해석됨

○ 학교 보건실, 회사 건강관리실(의무실)은 학교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처치, 양호 행위를 보장받고 있음

-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음

2. 건의과제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직원 배치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하고, 내부 건강관리센터에서 수행가능한 건강관리 업무 규정을 명확히 제시

-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도 기초적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입주자 대상 포괄적인 상담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구 활용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인지선별검사 등)
 - 신체계측, 혈당, 활력징후 등 대중적 건강측정 수행
 - 골절 또는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 통증의 완화를 위해 온냉 찜질, 원적외선 치료 등 대중치료 수행

④ 한국영화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제한

대중상 수상작도 VC 투자 못 받았다... 훨씬 클 수 있는 한국영화산업에 재갈

1. 제안배경

- [현황] VC 투자는 중소기업 수익 지분 60%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중 40% 이하)인 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한국영화 VC 투자 제한
- 최근 OTT시장 확대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통폐합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면서 VC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 증가
 - * 2023년 대중상 작품상 수상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경우, 중앙홀딩스(상호출자제한기업)이 최대주주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 → VC 투자 유치 불가
 - * 2023년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의 경우, VC 총 9개사 참여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중소기업))

※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제4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문제점] VC 투자 감소로 투자 리스크 분산이 제한되며 개봉 지연 발생
- 우수제작사의 영화도 현행 중소기업 수익 지분 비중(60% 이상)을 맞추지 못하면 VC 투자가 제한, 영화시장 자체의 투자 매력도 하락
- 개봉 직전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한국 영화산업의 특성상 투자 감소는 결국 개봉 지연 유발
 - *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 이후 적체된 60여 편이 개봉 지연되어 투자회수를 못 하고 있음
 - * 2025년의 한국영화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

2. 건의과제

- 한국영화에 대해 중소기업 수익 지분 60% 이상인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유예
 - 코로나 이후 영화산업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현 상황의 빠른 타개 필요
 - 최소 약 3년 이후에는 자금 순환(투자→회수→재투자)이 가능한 환경 복원 예상

③ 허용인 듯 허용이 아닌 규제

⑤ 드론 비가시권 비행 불허

드론이지만 멀리 나는 건 금지! 장거리 비행 허가에 한달 이상 소요

1. 제안배경

- [현황] 무인비행장치(드론)은 육안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조종 허용
- 드론은 촬영, 물류, 관측 등 활용도가 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민간시장이 빨리 성장해야 경쟁력 확보 가능
- 드론의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평균 30~40일이 소요되는 안전 기준검사(*항공안전기술원 시행) 및 특별비행승인 필요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문제점]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연

- 드론 배송 등 기술 실증에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하나, 우수사업자가 아니면 경미한 변경이 발생해도 매회 안전기준검사 후 특별비행승인 필요
- 일본은 관련 규제를 완화한('18) 후 도심 내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22)하며, 미국도 일부 드론 사업자에게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23)

* <미국 상용화 사례>
- 아마존은 美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드론 배송을 하고 있으며, 올해 중 유럽에도 드론 배송 업무 확대 예정
- 집라인은 르완다·가나의 전초기지에 의료품을 드론 배송 중이며, 지금까지 낙하산으로 물건을 떨어뜨렸으나 앞으로는 밧줄로 내려주도록 드론 기술 업그레이드 예정

2. 건의과제

□ 자체 안전기준검사 가능 대상 확대

- 기술적으로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안전검사 허용
 - 현재는 우수사업자인 경우에만 자체 안전기준검사를 허용하고 있음

| 현 행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개 선 안 |
|---|---|
| <p>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생략)</p> <p>② 비행계획의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의 검사 및 승인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서 추가> 유효기간 연장은 비행경로 및 기체, 조종자등이 종전의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p> | <p>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비행계획의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의 검사 및 승인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u>비행계획 변경의 사유가 기술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교체인 경우, 변경 후 비행계획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u> 또한 유효기간 연장은 비행경로 및 기체, 조종자등이 종전의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p> |

⑥ 자율주행로봇의 학습 제한

사람 눈·코·입도 못 알아보는 자율주행로봇, 도로 주행할 수 있을까

1. 제안배경

□ [현황] 자율주행로봇이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한 부과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AI 솔루션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명처리 정보만 주체 동의 없이 연구에 사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모자이크) 정보만 주체 동의 없이 연구에 사용 가능
 - 올해부터 원본영상 이용 가능해졌으나, 정식법령이 아닌 규제샌드박스 활용
-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

□ [문제점] 자율주행로봇 상용화 및 경쟁력 확보 지연

-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된 영상정보만 활용할 경우 기술 경쟁력 저하 및 향후 실제 주행 시 안전성 문제 발생
 - 원본영상 활용 시 가명처리 영상 대비 AI 정밀도 최대 17.6% 개선(IEEE)
- 미국, EU의 경우 원본영상 활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음(네거티브 규제)
 -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정보 수집, 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 보호조치 수립 등을 수행하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의무만을 부과
- * (美)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사생활 보호법 (Automotive Cybersecurity and Privacy Act)
셀프 드라이브법 (SELF DRIVE Act)
-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자율주행차 정보보호 권고 보고서 (Ethics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2. 건의과제

-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 가명처리 정보 예외 사항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 추가

| 현 행 (개인정보 보호법) | 개 선 안 |
|--|--|
| <p>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 <p>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목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명처리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용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2.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외부망 접속 차단 공간 확보 |

4]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규제

⑦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 제한

승차공유 불모지 된 한국, 이젠 모빌리티 숨실 구멍 뚫어야

1. 제안배경

□ [현황] 각종 규제로 모빌리티 사업 제약, 다수의 사업자가 운영 종료

<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

| 업체 | 우버 | 플러스 | 타다 | 여객자동차 플랫폼사업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운송 제공, 요금을 받는 승차공유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상 카풀 중계 서비스 24시간으로 확대(기존에는 낮 시간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렌터카(승합차)와 운전자를 초단기간 목적지까지 빌리는 모빌리티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택시 면허 없이 유상 운송 |
| 관련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금지 (여객자동차법 8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상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정의하는 규정* 신설 (여객자동차법 8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여객자동차법 34조, 일명 타다금지법) 택시 면허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차량대수 제한, 기여금 납부 의무 등 부과 (여객자동차법 49조의 3, 동법 시행령 20조의 7)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폐('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료('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료('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

* 평일 오전 7 ~ 9시, 오후 6 ~ 8시

** 대여 시간(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공항, 항만)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문제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이동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불가능, 다양한 이동 서비스 공급 제약

○ 택시기사 고령화 및 감소 현상, 심야운행 축소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체 교통 부재

* 전국 택시기사 수 : 26.5만 명('20년 1월) → 23.6만 명('23년 12월)

택시기사 중 65세 이상 비율 : 39.7%('21년) → 45%('23년)

* 서울 심야 운행 : 2만 6566대('19년 12월) → 2만 1617대('23년 9월)

○ 유상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연근무제*** 등 새롭게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불가

* 유연근무제 활용률(통계청) : 4.2%('19년) → 16.8%('21년) → 15.6%('23년)

○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는 교통약자 특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허가 차량대수 제한* · 기여금 부담 의무** · 기존 업계 견제로 확장 한계

* 허가대수: 현재 총 3개 업체 520대 허가 vs. 서울 택시 약 7만 대('23. 12월 기준)

** 기여금: ①~③중 택1하여 기여금 납부 필수

①분기별 매출의 5% ②허가대수당 월 40만원 ③운행당 800원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하여 합법화

- 일본은 당초 승차공유를 금지했으나, 기사 수 감소 및 운행 축소 이슈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 서비스 허용

- 미국은 책임보험 가입 및 운전자 신원 확인 등 승차공유 서비스 보완책 마련

2. 건의과제

□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및 부담 완화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예외 조항에서 ‘출·퇴근 시간대’ 삭제
→ ‘택시 등 타 교통수단 공급 부족한 경우’ 추가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 선 안 |
|---|---|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 ----- ----- ----- ----- |
|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1.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

| | |
|---|---|
| <p>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p> <p>2. 생략</p> <p><신 설></p> | <p>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3. 택시 등 타 교통수단 공급 부족한 경우</p> |
|---|---|

○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허가 차량 대수 폐지 및 기여금 인하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 선 안 |
|--|---|
| <p>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p> | <p>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 <p>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 <p>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4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2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

⑧ 원격의료 서비스 제한

비대면 진료 급등에도... “약은 직접 타 가십시오”

1. 제안배경

□ [현황] 현재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약품 배달 금지 등 관련 서비스가 제한됨

○ 의료법에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규정,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조항 부재

* 단,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

※ 관련법령 : 의료법 제34조

○ 약사법상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수령 필요

※ 관련법령 : 약사법 제50조

□ [문제점] 법령 부재로 원격의료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의약품 수령이 대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원격의료 미완성

○ 법령 부재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잦은 제도 변경* 발생

* 초진 : 가능(코로나 中) → 대부분 불가('23.5) → 제한적 가능('23.12) → 가능('24.2)

○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성이 하락하고, 관련 업체는 제도 변경 시 사업을 조정**하는 등 리스크에 노출

* 비대면 진료 소비자 만족도: 만족 62.3%, 향후 활용 의향 87.9% (보건산업진흥원, '22)

** 비대면 진료 축소 발표('23.5월) 후 원격의료 플랫폼 30곳 중 약 50% 서비스 종료

○ 비대면 진료 후 대면으로 약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및 휴일·야간 이용자* 불편 초래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23.12) 후 휴일·야간 건수 약 163% 증가

○ 해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제도 구축

* 주요 선진국 현황 : OECD 38개국 중 32개국 비대면 진료 도입

**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 건의과제

□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격의료 대상에 추가하고,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의료인의 환자 진료 추가하여 제도 안정성 제고

| 현행 (의료법) | 개 선 안 |
|--|--|
| <p>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 <p>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u>또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u>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u> 2. <u>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u> |

○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 장소제한 예외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 포함

| 현행 (약사법) | 개 선 안 |
|--|--|
| <p>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 설>에는 예외로 한다.</p> | <p>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u>및 의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원격의료로 처방받은 경우</u>에는 예외로 한다.</p> |

⑨ 핀테크 생태계 조성 지원

新산업 진출 가로막힌 핀테크, 기초도로 뚫어주자

1. 제안배경

□ [현황]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06)은 스마트폰 대중화 전 도입되어 다양한 신규 금융서비스의 수용이 어려운 문제점 노출

○ 금융당국은 제한적인 전자금융업종 정의·분류를 재설계하여 핀테크 사업자들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답보 상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 전자금융업 구분 재설계

- 포지티브 열거 방식의 칸막이식 전자금융업종(7개) → 기능 중심으로 통합·단순화(3개)
-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 수행 가능, 자본금 200억원 要)
-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소규모 사업자로서 핀테크들이 전자금융업 진입 용이, 자본금 3억원 要)

○ 주요국에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법·제도 적극 정비

- 주요 60개국에서 종합지급결제업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 (바젤위원회(BIS))

- * (EU)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18)
- (英)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17)
- (싱가포르) 「Payment Services Act」 ('20)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6조

□ [문제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

○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은행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필요

* 이용자에게 계좌를 발급해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예금 및 대출은 불가)

- 금융서비스에 더해 핀테크별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 기대

* 英 핀테크 기업 Revolut(가치 44조원)은 여행, 반려동물 케어, 보험 등 20여가지 하위 서비스 제공

** 지급결제 수수료(보험업 연 1,000억 이상) 절감 등의 효과가 소비자에 전달 예상

(중 략)

<신 설>

제36조의4(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하려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자금이체업자로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간제한 등 과도한 게임 규제

전국민의 100명만 이용하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제 이별할 때

1. 제안배경

□ [현황] 정부가 주도하는 게임물 등급 심의,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등 과도한 게임산업 규제

○ (등급 분류 심의)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 위탁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정성·사행성 우려로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공공 보유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를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시행

- 미국, 유럽, 일본은 민간기구가 등급분류 심의

* 미국(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유럽(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일본(CERO: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 우리정부는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케이드 게임 제외

* 민생토론회('23.1) 및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계획('24.3)

○ (게임시간선택제)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막는 제도인 강제적 섯다운제는 폐지('22.1)되었으나, 게임시간선택제*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 94명에 불과 (이상현 의원, '게임시간 선택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실적')

* 청소년 혹은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24조의 2

□ [문제점] 민간 창작 자율성 침해 우려 및 산업계의 불편 가중

○ 등급 분류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이 없어 분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같은 게임에 대한 분류가 해외와 상이한 사례 발생

* <사례> 일본 게임 "니노쿠니": 韓(청소년 이용불가), 日(전체 이용가)

한국 게임 "블루 아카이브": 韓(청소년 이용불가), 美(17세 이용가), 대만(15세 이용가)

- 사업자는 게임시간선택제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청소년의 결정권 제한 등의 이슈도 대두

2. 건의과제

□ 민간이 심의하는 게임물 대상 확대

- 게임의 사행성 여부 판단을 민간 위탁 대상에 포함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p>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p> <p><신 설></p> <p>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p> <p>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p> | <p>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여부 확인</p> <p>3.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p> <p>4.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p> |

□ 시간선택제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p>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p>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3 <삭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삭제>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6 <삭제> |

5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11 원료 생산자만 규제하는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

만들긴 만들지만 쓰진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 '재생플라스틱'

1. 제안배경

□ [현황]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자를 '재활용 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재활용목표이용율 부과

○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연간 1만톤 이상의 PET를 생산하는 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

○ 재활용지정사업자에게는 일정비율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하도록 강제 (재활용목표이용율을 부과)

* 재활용목표이용율 : 2030년까지 30%

* 이용목표율 산출 : 연간 국산 PET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 신규원료생산량*100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문제점] 현행 규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게만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재활용원료를 사용해야 할 포장재 제조 및 수입자(최종제품생산자)에게는 별도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재활용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에 수요가 없는 상황으로 생산단가가 높음, 후방산업 쪽 수요를 늘려야 할 필요성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美캘리포니아의 경우 포장재 제조 수입자를 대상으로 재생플라스틱 사용의무 부과

2. 건의과제

□ 국내 재활용원료 시장의 실질적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 포장재 제조 및 수입자에게도 재활용목표이용율 부과

⑫ 비현실적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수익있는 곳에 세금 있다? 면세점 적자에도 수백억원 징벌적 과세

1. 제안배경

□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 >

| 해당 연도 매출액 | 특허 수수료율 |
|----------------|-----------------------------|
| 2천억원 이하 |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 1조원 초과 |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 |

- 기존에는 면적 기준으로 특허수수료(행정수수료 명목)를 부과했으나, 2013년 부터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며 징벌적 과세 도입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면세사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면적당 혹은 점포당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책정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76조의2,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 [문제점]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면세점 적자 상황임에도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으로 연간 수 십억 ~ 수 백억원 납부

- 코로나19 타격 이후 업계(한국면세점협회)에서는 특허수수료 선정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허('22)

* 2022년 롯데면세점은 약 1,650억원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 161억원 납부 (50% 감면 후 기준. '20년~'23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 50% 감경 실시)

2. 건의과제

□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의 변경

- 보다 합리적이고 기업에서 예측가능한 수수료율 선정

*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 매출액 기반 →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6 산업 발전을 불드는 발목 규제

13 대형마트 규제 (공휴일 의무휴업, 온라인 배송 규제)

대형마트 대못 규제, 빨리 뽑아야 알리·테무에 안 진다

1. 제안배경

□ [현황] 대형마트 휴일 영업 제한과 온라인 배송 규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

○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제한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변 상권에도 피해 발생

* 유통산업발전법('12년 개정)

-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 영업시간 제한 (자정 ~ 오전 10시)
- 휴무일 및 영업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금지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 [문제점] 공휴일 의무휴업 관련 규제 효과가 미미하고, 타 온라인 플랫폼 대비 형평성 위배 및 소비자 후생 감소

○ 공휴일 의무휴업 관련 규제 시행이 10년 넘게 경과했지만, 대형마트 매출을 중소 유통으로 전이시키는 실질적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음

○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중소유통, 대형마트 유통을 포함하여 모두 축소 추세

* 국내 유통산업 비중 변화(산업부)

- 대형마트 : ('14년) 27.8% → ('24년) 13.3%
- 온라인 시장 : ('14년) 28.4% → ('24년) 49.8%

○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등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 (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소비자 후생도 감소

2. 건의과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공휴일 원칙 폐지

- 공휴일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특성 및 고객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지자체 장 권한으로 의무휴업 추진방식 개선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개 선 안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에 따라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1. 의무휴업일 수 2. 의무휴업일의 요일 |

□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개 선 안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다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u>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u>대규모점포 등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u> |

⑭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생협력 의무 중첩

대규모점포 출점 상생협력 의무, 상생인가 이중규제인가?

1. 제안배경

□ [현황]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시 2개 법률에 상생협력 의무 규정

○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에 따른 점포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에서 유사한 상생협력 의무를 각각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상생협력법 제32조)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 사업조정 의무 부여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문제점] 상생협력 의무가 중첩되며 과도한 부담 발생

○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 의무(상생협력법)는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고, 규제 자체도 과도한 측면 존재

-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이 10% 증가하면 변경등록을 의무화, 매장리뉴얼을 위한 부분공사로 10% 면적 증가 시 새로 등록 필수

-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 신청은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끝난 후 180일 까지도 가능하게 해 지나치게 긴 사후규제로 작용

2. 건의과제

□ 상생협력 의무의 중복되는 측면 조정하여 부담 경감

○ 중복규제 성격이 강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사업조정 의무를 통합 조정할 필요

○ 기업의 과도한 상생협력 부담을 경감
(매장면적 증가기준 10% → 30%, 180일 사후규제 조항 삭제)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개 선 안 |
|---|---|
| 제8조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3이상 증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삭 제> |

⑮ 대규모유통 전자계약 미교부 시 보복성 제재

납품업자 과실도 대규모유통업자 처벌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 제안배경

- [현황]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양자 서명된 계약서 교부 필수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양자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조

- [문제점] 전자계약의 경우, 납품업자 책임으로 전자서명 미완료 빈번
-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유통업자가 미리 전자서명한 계약서를 시작일 전 발송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부주의로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 빈번
- 동 법과 유사한 대리점법에서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 건이 과태료 부과 사항

※ 관련법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2조

2. 건의과제

- 단서 조항 추가로 서면교부 의무규정 완화 및 처벌 경감
- 서면교부 의무 완화, 책임주의에 따른 제재 적용, 과징금 유사법안 수준으로 개정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제6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 | 제6조 ② 단, 서면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책임을 감면한다. |
| 제35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략)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5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삭 제> (중략)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41조 <신 설 > | 제41조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⑥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____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⑩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행정절차 중복

쇼핑몰 內 마트는 쇼핑몰 허가, 마트 허가 “따로따로”

1. 제안배경

- [현황]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동일 서류 개별 제출 필요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각각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필요
 - * 대규모점포 : 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준대규모점포 : 기업형 슈퍼마켓(SSM)
 -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3기관 검증 등 별도 행정절차 필요
 -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문제점] 같은 건물 내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행정절차 중복 진행
 -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개별 서류 등록 및 행정 절차가 필요하여 신규 출점 애로

2. 건의과제

- 대규모점포 개설 위한 서류에 준대규모점포 관련 내용 포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대규모점포 개설 서류에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절차 완화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준대규모점포 개설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동시에 등록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개 선 안 |
|--|--|
| 제8조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후략) <신 설> | 제8조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후략) 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에 준대규모점포 개설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⑰ 대기업 대상 거래에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법

샤넬 · 루이비통도 보호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중소기업체로 한정해야

1. 제안배경

- [현황]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적용
- 대규모유통업법은 하도급법 등 다른 거래공정화특별법 형태의 법령과 비교하여, 법 적용의 유연성 및 부당성 입증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관련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문제점] 유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와 책임 부담
- 하도급법은 거래 상대방을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유통사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에도 과도한 법적 의무와 책임 부담
 - 거래환경 위축 및 소비자 후생 저해 우려

2. 건의과제

-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법 적용 제외
- 하도급법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경우 적용 제외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제3조(적용제외) ① 1, 2 <생략> 3. <신설> | 제3조(적용제외) ① 1, 2는 동일, 3. <신설> <u>거래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경우</u> |

⑱ 과도한 부담의 흡쇼핑 재승인 조건

흡쇼핑 재승인 조건이 “7년 전 사업계획 사수?”

1. 제안배경

□ [현황] 흡쇼핑 승인유효기간(매 7년)마다 과도한 규정의 심사를 적용하여 흡쇼핑 사업자 경영 환경 규제

○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는 기존 인력의 유지, 방송발전을 위한 투자 규모, 사회 공헌(중소기업 상품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건이 포함

* 세부 요소 약 300여개

※ 2025년 TV흡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예시

- 지역사회 발전·공익사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상품 구성·확보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방송시설·기술 운용 실적 및 투자 계획의 적절성
- 조직·인력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방송영상산업 육성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관련 법령 : 방송법 제17조

□ [문제점] 세부내용을 규정한 장기 사업계획(7년)의 100% 이행을 요구,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게 함

○ 재허가·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7년간의 연단위 계획을 세우고 변경 없이 따라야 하며, 미이행 요소 있을 시 행정처분 및 다음 재승인 시 감점

- 경영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처 불가

2. 건의과제

□ 주요한 요건들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축소

○ 기재 항목 축소

○ 조건 부과를 위한 중요 사항을 특정하여 기업 부담 경감

⑱ 중소상공인 운영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슈퍼도 준대규모점포 규제 받아야 하나

1. 제안배경

□ [현황] 운영주체(대기업·중소상공인)에 대한 고려 없이 체인사업형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지정

○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체인사업형 점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 체인본부가 개별 점포의 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을 결정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문제점] 중소기업 운영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

○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로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운영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입지·영업제한 등 규제 적용은 부당

○ 운영 주체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 여부 결정 필요

2. 건의과제

□ 중소기업 운영 체인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 현행 | 개선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제2조(정의) ----- -----. 4. -----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u>다만, 같은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u> |

7]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규제

20] 의료기기 사진 광고 금지

의료기기, 감추기보다 정확·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우선

1. 제안배경

□ [현황] 사진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에 대해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

- 의료기기 광고시 의료기기의 종류·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국*·유럽**의 경우, 광고의 내용이 사실 및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사진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 없음*

* Restricted medical devices를 별도 지정하여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관장, 일반 대중용 의료기기는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관장

**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24조

□ [문제점] 일괄적 규제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 전문가용 의료기기의 성능 전달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없어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가 어렵고, 국내 전용 광고를 별도 제작하여야 함

< 전문가용 의료기기 동일 규제 예시 >

- 초음파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의 대상인 의료인은 일반 소비자에 비하여 광고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의료기와 차별 없이 동일 규제

* 고가의 전문가용 의료기기의 경우 주로 의사 및 방사선사가 주 사용자

2. 건의과제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사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금지조항 개정

| 현행 | 개선안 |
|---|---|
| <p>의료기기법 제24조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p> | <p>의료기기법 제24조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다만,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의학 의료기기의 경우 그 성능을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p> |

㉑ 비은행권 자금이체업무 금지

증권사 기업 여유자금, 굴릴 땐 굴리고 필요할 땐 쓰도록

1. 제안배경

- [현황] 증권사의 투자예탁금으로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에 한정해서 자금이체업무 수행 가능
 -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체업무가 금지되어 있어 은행의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펌뱅킹 방식 차용
 - * 펌뱅킹(Firm Banking) 방식은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제휴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 대비 수수료 10배 이상(건당 400~500원) 부과
 - 미국 등 해외 증권사는 은행과의 대행계약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할 수 있어 법인에 대해 자금이체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
 - 해외 증권사들은 기업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현금관리 서비스 제공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23.9월)’을 통해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의 확대 계획 발표
 - [문제점] 법인이 증권사 계좌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
 - 법인이 증권사 계좌 이용시, 높은 수수료에 더해 은행의 법인계좌로 자금 이체 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및 행정 비용이 증가
 - * 사업자 등록증, 자금이체서, 진위여부, 금융결제원 승인 여부 등 제출 필요
 -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 시, 기업이 편리하게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금융투자서비스 편리성도 제고
 - 증권사와 은행 간 기업금융서비스 경쟁 촉진
-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제4호 및 금융결제원 규약

2. 건의과제

□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체업무 확대

| 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생 략) 1~3. (생 략)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위탁한 투자 위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좌 동) 1~3. (좌 동) 4.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가 위탁한 투자위탁 금의 자금이체업무 |

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회사 차입제한

카드사·캐피탈사의 자금 조달 숨통 트여주자

1. 제안배경

□ [현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문제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우량 모회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및 유동성 위험 관리 수단이 제한

○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내수경기 부진 지속으로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시중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상승 추세

○ 비금융 모회사로부터의 직접 차입이 불가능, 모회사의 보증을 받아 금리부담을 낮춘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자부담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 중

※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2. 건의과제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만 허용 → 차입제한 완화

○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 혹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허용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 선 안 |
|--|--|
|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5. (생략) |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좌동) 2~5. (좌동) 6.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최대주주 |

⑧ **행겨야 할 나몰라라 첨단산업**

㉓ **첨단재생의료 저위험도 기술 승인절차 완화**

“기적의 치료제” 첨단재생의료, 저위험도 기술부터 허들 낮춰야

1. 제안배경

□ [현황]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저위험도 기술에 대해서도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절차 필요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고위험^①, 상당 위험^②, 저위험^③으로 분류

①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②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

③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임상연구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횰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필요

※ 관련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횰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문제점] 저위험도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계획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新의료기술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환자 접근성 저하

- 제한적인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만이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받을 수 있음

- 일정 수준 이상 안전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시설도 기존 임상시험을 모두 거쳐야 해 환자들이 관련 기술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

-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은 제한적 기술을 통해서라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모든 단계 임상시험 완료 후에 기술이 가능해 新의료기술 시장진입에 큰 장벽이 되는 상황

2. 건의과제

□ 첨단재생의료 저위험도 시술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 절차 면제

○ 저위험도 시술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의 승인절차를 면제해 환자의 접근성 증진

|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p>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 <p>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u>다만 법 제2조 3호, 다목에 해당하는 저위험 임상연구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② ~ ⑤ <현행과 동일></p> |

㉔ 첨단 바이오의약품 활용 기반 확대

규제보다는 배려가 필요한 걸음마 단계 “첨단바이오의약”

1. 제안배경

- [현황] 기존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지원법을 통합해서 첨생법 제정
- 2020년 기존 재생의료특별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지원법을 통합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을 제정
 - 기존 재생의료법은 새로운 치료제와 치료법의 연구개발을,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바이오의약품 상용화·발전이라는 상이한 목적 하에 제정
- ※ 관련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점] 기존 개별법 특성 상실 및 과도한 규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촉진 저해
- 법률 통합으로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활용의 제도화라는 성과가 있는 반면, 개별법 특성 상실
 -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위험한 활용 규제와 연구개발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은 부족한 실정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시술 허용 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사례) 세포유전자 치료제 >

- 현재 국내시판 허가를 받고 치료에 활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김리아와 줄젠스마의 경우, 유전자 조작 - 세포 증식 - 환자용 치료제 제조의 주요 과정을 치료제 개발 제약사에서 진행
- 그럼에도 환자 혈액에서 세포를 분리·정제·냉동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첨단시설 설치를 병원에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시설과 인력 투자가 가능한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치료 시행
 - 병원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체세포 등 관리시설(GMP)과 운용 인력에 과도한 투자를 해야 해 의료인력과 투자재원 소모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생산 및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특히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진료 지원이라는 원칙에도 위배
- 유전자세포 치료제 개발사가 해외일 경우, 분리 냉동한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치료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운송받는 등 치료 지연 발생

2. 건의과제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시설 허용 기관 확대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시설과정 중 병원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병원의 관리시설(GMP)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국내 제약사, 세포치료제 연구소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이 위탁을 받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병원의 무리한 GMP 시설 투자 방지, 병원 외 GMP 시설의 활용 증대 등

|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 선 안 |
|---------------------------------------|--|
| <신 설> | 제23조의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제조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㉔ 항공기부품 무관세화

우리나라만 부과하는 항공기부품 관세,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사수 필요

1. 제안배경

□ [현황] 항공기 제조용 부품·원재료 수입 시, 일정비율로 관세를 감면

○ 항공기부품 관세감면은 금년까지 100% 감면 후, 20%p씩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되며 2028년에 20% 감면을 끝으로 일몰 예정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89조

□ [문제점] 우리나라만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일몰 시, 항공사 글로벌 경쟁력 저하

○ 항공기부품 관세감면제도는 2011년까지 영구조항이었으나,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제도 실효성 감소 사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 -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일몰기한('14, '16, '18, '21) 연장 중

○ 항공기 부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소수 독과점 시장으로, 해외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원산지 증명을 거절*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15%~20%)

* (거절사유) 생산기지 다국화로 원산지정보 추적불가, 원산지 추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행정력·추가인력 투입 필요, 원산지증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TCA) 가입 또는 자국법 등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무관세로 교역 중

2. 건의과제

□ 항공기부품 관세감면제도를 (1안)폐지하거나, (2안)일몰연장(최소5년)

| 현행(관세법) | | | | | 개 선 안 (2안 기준) | | | | |
|--------------------|---------------|---------------|---------------|---------------|--------------------|---------------|---------------|---------------|---------------|
|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 | | |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 | | |
| ⑥ (생략) | | | | | ⑥ (좌동) | | | | |
| 1. (생략) | | | | | 1. (좌동) | | | | |
| 2022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월 1일부터 | 2026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8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월 1일부터 | 2030년 1월 1일부터 | 2031년 1월 1일부터 | 2032년 1월 1일부터 | 2033년 1월 1일부터 |
| 2024년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 100분의 100 | 100분의 8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20 | 100분의 100 | 100분의 8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20 |

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해외항공사 대비 불리한 항공기 관련 세제 개선

1. 제안배경

□ [현황] 항공운수사업자의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60%, 50% 감면 중이나, 금년 말 감면 종료 예정

○ 취득세 감면 제도는 '24년 일몰 예정이며, 재산세 감면 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24년 일몰(그 외 기업은 항구 적용)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 [문제점]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과 시,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 미국·중국·유럽·싱가포르 등 글로벌 항공업계는 주요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중

< 주요국 사업용 항공기 취득·재산세 부과 현황 >

| 구 분 | 취득세 | 재산세 |
|-----------------------------|-------------------------|-------------------------|
| 미국 | 없음 | 없음 |
|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 | |
| 아시아(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 | |
| 일본 | | 80~90% 감면 |
| 한국 | 60% 감면 ('24년 일몰 예정) | 50% 감면 ('24년 일몰 예정) |

○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해서도 항공산업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세제 지원이 필수적

2. 건의과제

□ 사업용 항공기 취득·재산세를 (1안)폐지하거나, (2안)일몰연장(최소5년)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 개 선 안 (2안 기준) |
|--|--|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 략)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 (중 략) ---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 략)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 (중 략) ---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㉔ MRO산업 국내기업 역차별 개선

잠재력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MRO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이 우선

1. 제안배경

- [현황] 항공 MRO 산업 활성화 및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 우리정부는 2025년까지 항공 MRO 물량의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MRO 시장 규모를 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수립
 - *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21)
 - 투자 인센티브로 인천국제공항 MRO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비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5% 부과
- [문제점] 인천공항 MRO단지 내 국내 민간기업 투자 시 공시지가의 10% 수준의 토지임대료를 부과하여 외국기업과 큰 차이 발생
 - MRO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거나, 외투기업 대비 역차별 발생 및 국내기업 투자 저해

| 구 분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기업 |
|-----------------|--|----------------|
| 토지 사용료 | · 토지가액의 1% ~ 5% 수준 | · 토지가액의 10% 수준 |
| 건물 임대료 | · 투자금액/고용인원 등에 따라 임대료 50 ~ 100% 감면 | 미적용 |
| 조세감면 (요건충족시) | · 취득세 : 15년간 100% 감면 · 재산세 : 10년간 100% 감면 · 관세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감면 | |
| 보조금 지급 | · 요건 충족시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지급 | |

2. 건의과제

- 인천공항 MRO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외국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부과

9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마중물 산업

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100조 시장 키우자면서 특별법은 외면 중?

1. 제안배경

- [현황] 해상풍력 관련 법제가 여러 법에 흩어져 규정된 채 입법 난항
 -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상풍력 관련 법제는 전기사업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흩어져 규정
 - ※ 관련법령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문제점] 통합 법률 부재로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탄소중립 요건 및 RE100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성장세
 -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2022년 63GW에서 2032년 477GW 까지 증가할 전망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
 - 우리 정부도 풍력에너지를 2030년까지 18.3GW, 2038년까지 40.7GW 규모 (2022년 대비 21.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보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
 - 주요 선진국들은 해상풍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 * 일본 해양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해역 이용촉진법('19), 호주 해상전기인프라법('22년) 등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통합 법률 부재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 발생,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

2. 건의과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주요내용: ①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 발굴·추진 ②해상풍력발전위 설치 및 기본계획안 수립 ③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 마련 ④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마련 ⑤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운영

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취업자 70% 종사 서비스업 지원법, 10년 넘게 표류 중

1. 제안배경

□ [현황]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미비

-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표방했지만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서비스산업 발전은 장기 비전하에 지속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달성 가능
 -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2년 최초 발의 후 현재까지 표류

※ 관련법령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문제점] 통합 법률 부재로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
- 서비스산업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로,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한국경제 구조 개선과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제조업) 6.26, (서비스업) 11.52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 기준)
-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의 70~80%를 서비스업에서 창출하고 있으나, 한국은 10년간 60% 내외에서 정체
 -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韓 62.5%, 美 80.1%, 佛 70.2%, 日 69.5%, 獨 63.0%
(출처 : OECD, 2021년 기준, 미국·일본은 2020년 기준)
-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70%) 또한 주요국 대비 저조한 편
 - * 서비스업 고용 비중 : 韓 70.0%, 英 81.0%, 美 79.2%, 佛 78.0%, 日 73.1%, 獨 71.1%
(출처: ILO, 2021년 기준)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

2. 건의과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30 관광청 설립

K-문화강국인데... 관광산업 “30년 적자”

1. 제안배경

- [현황] 관광행정 기능이 10여개 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추진
 - 관광 관련 부처 : 기재부(면세점), 환경부(국립공원 등), 농림부(생태관광), 법무부(비자), 행안부(지자체), 복지부(숙박업관리), 산업부(전시산업), 과기부(스마트관광) 국토부(항공·철도·도로), 해수부(해양관광), 개별 지자체 등
 - ※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 [문제점] 관광행정 기능 분산으로 관광산업 전략 육성 애로
 - 관광 행정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광정책 수립에 한계
 - * 한국 여행수지, '91년 이래 외환위기 때인 '98년, '9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
 - 일본의 경우, 관광청을 설립한 후 타 부처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자국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 [일본사례] ① (행정기구) '08년 국토교통성내 관광담당 부서를 별도 분리, 관광청 신설, '13년 타부처간 연계를 위해 총리 산하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구성 ② (인력육성) 관광청 내에서만 업무순환 → 他 부처 보직 금지

2. 건의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외청으로 관광청 설립
 - 주요업무 : ▶ 정책 기획 ▶ 관광 관련 법안 발의 ▶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래 관광 신성장동력화 ▶ 국제관광분야 정책수립 ▶ 홍보·마케팅 등

| 현행 (정부조직법) | 개선안 |
|--|--|
|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④ (생략) |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
| ⑤ (신설) | ⑤ 관광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관광청을 둔다. |
| ⑥ (신설) | ⑥ 관광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